

연구윤리지원센터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연구윤리확립과 연구신뢰성향상을 위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윤리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 및 업무)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설치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연구진실성위원회, 생명윤리심의위원회, 동물실험윤리위원회, 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지원
3. 제2호의 각 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경과에 대한 조사 감독
4. 연구윤리 위반사항 조사업무 지원
5. 연구윤리 교육
6.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3조(구성) 센터에는 센터장, 직원, 연구원,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5조(구성)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1. 당연직위원 : 연구진실성위원회, 생명윤리심의위원회, 동물실험윤리위원회, 생물안전위원회의 각 위원장

2. 임명직위원 :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

제6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운영의 기본계획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연구진실성위원회, 생명윤리심의위원회, 동물실험윤리위원회, 생물안전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4.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7조(소집과 회의)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8조(재정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학협력단지원금, 정부보조금, 기타의 재원으로 한다.

제9조(회계년도) 센터의 회계년도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년도와 같다.

제 5 장 보 칙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